

미국의 해외부정거래방지법 및 기타 부패금지법 준수

정책

몬산토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및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협정을 실행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미국의 해외부정거래방지법(“FCPA”) 및 다른 나라의 유사한 뇌물금지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임의의 계약, 면허 또는 기타 몬산토에 유리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 3 자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외국 관계자”¹ 에게 뇌물, 리베이트 또는 기타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공, 지불, 약속 또는 승인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또한, 모든 해당 당사자는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고안된 몬산토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몬산토는 FCPA의 회계 및 기록보존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몬산토는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몬산토의 사업 파트너로부터 받은 또는 사업 파트너가 작성한 청구서 및 기타 문서를 신뢰합니다.

범위

이 정책은 몬산토를 대신한 사업 파트너가 수행한 모든 조치와 몬산토 임원, 이사, 정규직, 임시직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정책은 모든 제휴사와 몬산토에 의해 관리되는 합작기업에 적용됩니다.

¹ “외국 관계자”에는 행정부, 입법부 또는 사법부 그리고 국가, 주 또는 지방 차원 (또는 이와 동등)의 미국이 아닌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의 모든 직원이 포함됩니다. 이 용어는 파트타임 근로자, 무보수 근로자, “공적 지위를 대신하는” 모든 사람 및 왕족의 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관계자”의 용어 하에는 정당, 당 관계자, 공직 후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관계자에는 국제연합(“UN”), UN의 식량 농업 기구(“FAO”),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및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와 같은 국제 공공 기구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외의 정부 관계자”라는 용어에는 공공학술기구 및 정부소유 또는 관리기업(비록 이 기업이 사유기업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도)의 임직원이 해당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는 관계자로 취급되지 않고, 다른 모든 민간기업관계자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FCPA의 목적에 따라, 해당 정부에서 관계자로 간주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회사”를 대신하여 “외국 관계자”와 상호교류할 수 있는 몬산토를 대표하는 모든 사업 파트너(컨설턴트, 에이전트, 영업사원, 대리점, 독립 도급업체)는 이 방침의 모든 해당 부분을 따라야 합니다.

토론

FCPA는 사업을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해 “외국 관계자”에게 지불 또는 심지어 지불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기만 해도 불법으로 취급합니다. 사업을 확보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몬산토에게 유리하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사치스러운 접대 또는 선물을 포함하여 제 3 자를 통하여 외국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행위는 뇌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법률 위반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FCPA는 외국 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불한 것도 책임을 설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으로 사용됨을 알거나 또는 알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업 사원, 컨설턴트, 에이전트,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합작기업 파트너 또는 기타와 같은 사업 파트너에게 지급하거나 기타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와 개인 임직원은 해당 사업 파트너의 지급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사업 파트너 자체가 FCPA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이 조항은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 파트너가 부정적인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값진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 관계자에게 전달할 “높은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몬산토는 주의를 기울여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 접근해야 하며 해당 사업 파트너가 모든 적용 가능한 부패금지법을 준수할 것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외국 관계자를 대신하여 발생한 선물 및 접대, 그리고 기타 비용이 FCPA 및 기타 국제 부패금지법의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몬산토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선물, 식사, 접대 및 출장의 제공 및 변제에 대한 회사의 정책 (기업 컨트롤러 정책 #85001.00)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는 서면으로 승인 받지 않는 한, 몬산토를 대신하여 외국 관계자에게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하도록 승인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대신하는 사업 파트너는 정부 관계자가 수행하는 정기적인 정부 조치의

실행을 신속히 처리하거나 보장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에게 지불을 촉진하거나 추진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불은 위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몬산토 정책에서는 지불의 촉진을 제안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지불에 대한 모든 요청은 거절하거나 즉시 지역 작업 그룹에 보고해야 하며, 사업 파트너의 경우에는 몬산토의 주요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외국 관계자에 대한 지불이 강요나 협박에 의거 실행한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불로서 FCPA의 한정된 예외 하에서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FCPA의 입법 기록에서는 강요를 FCPA의 위반에 대한 방어로 식별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불이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물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를 완화시키는 경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강요에 대한 방어는 지불을 하려는 개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희박한 긴급 상황에서만 정당합니다. 개인의 육체적 건강 또는 안전이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외국 관계자”에게 지불한 행위는 몬산토의 부패금지정책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반드시 확실해야 합니다. 모든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불은 지불 후 1 영업일 이내에 몬산토의 수석 변호사와 컨트롤러는 물론 관련 지역 법 리드, 지역 재정 리드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 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지불을 한 임직원 또는 사업 파트너는 적용되는 법률 위반의 법적 결과뿐만 아니라 회사에 의한 징계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조치는 다음과 같은 개인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 정책의 위반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의도된 것임을 알고 이를 업무규범실 또는 지역 작업 그룹에 보고하지 않은 사람, 또는
- 본인 또는 기타 직원에 의한 이 정책의 위반이 있었음을 알고 이를 업무규범실 또는 지역 작업 그룹에 보고하지 않은 사람.

감사

몬산토 내부감사부는 이 방침에 대한 적합성을 감사해야 합니다.